

**인천대학교**  
**12월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 날짜     | 시간            | 장소              | 내용   |
|----------------|--------|---------------|-----------------|--|
| 직무분석 경진대회 사전교육 | 12.16. | 10:00 ~ 13:00 | 12호관 컨벤션센터 105호 | DACUM법을 통한 직무분석방법 사전 교육                            |
| 직무분석 경진대회 본선대회 | 12.27. | 13:00 ~ 17:00 |                 | 사전교육에서 배운 직무분석방법 등을 활용하여 직무분석경진대회 본선 대회 발표, 시상, 수상 |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담당자(032-835-9254) 연락 후 신청바랍니다.

**중장년내일센터**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과 함께합니다**

**퇴직이나 전직, 재취업을 준비하고 싶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래 노동시장의 핵심 인력인 중장년이 생애 단계별 경력을 미리 계획하고 중장년의 경험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턴트가 제안해 드려니, 중장년내일센터를 적극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1. 서비스 신청방법: 중장년내일센터 이용방법**

|             |  |
|-------------|--|
| 1단계 서비스 신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프라인 신청<br/>지역별 중장년내일센터 방문<br/>(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7, 현대해상빌딩 3층)</li> <li>온라인 신청<br/>고용24(work24.go.kr) ➡ 취업지원 ➡ 취업역량강화 ➡ 중장년내일센터</li> </ul> |
| 2단계 컨설팅 진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컨설팅 진행<br/>컨설턴트 배정 후 1:1 컨설팅 진행</li> </ul>  |
| 3단계 프로그램 참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 프로그램 참여</li> </ul>   |

**인천광역시 청년마음건강센터**  
**청년의 마음으로, 보다 To Mi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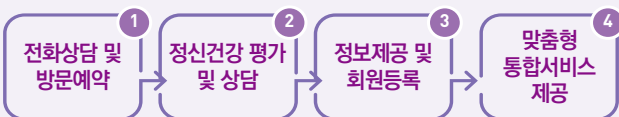
**1. 이용대상**

- 인천시 거주 19세~34세 이하 청년과 그 가족
- 정신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를 시작한지 5년 이내인 분

**2. 이용방법**

- 대면상담: 전화 예약 후 방문
- 전화상담: 032-212-1934
- 이용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야간 및 공휴일: 1577-0199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전화)

**3. 이용절차**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요양보호사 교육원 교육 프로그램 안내**

| 구분                      | 정원  | 교육비      | 일정                      | 시간                                      |
|-------------------------|-----|----------|-------------------------|---|
| 요양보호사 취득과정 (종일반-신규)     | 40명 | 880,000원 | 2024.12.2.~2025.2.5.    | 09:00~18:00 (320시간)                     |
| 요양보호사 취득과정 (사복자격증 소지자반) | 40명 | 250,000원 | 2025.1.4.~2.22.         | 09:00~16:00 (42시간)<br>09:00~18:00 (8시간) |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 40명 | 36,000원  | 11.30.12.7.12.14.12.21. | 09:00~18:00 (8시간)                       |

**1. 수강신청 시 참고사항**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정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 가능한 수업입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 시, 개인별 자부담은 상이합니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전액 자부담 수업입니다.

**2.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 시 교육비 안내**

- [교육비 납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 시 훈련비 90% 선부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중 특정 계층 등 훈련비 우대지원대상은 10%)
- [훈련비 환급]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내에 동일 직종으로 취업 후 180일 유지 시 선부담금 전액 환급 (고용보험 미가입 시 환급대상 제외)

**3. 문의사항: 070-4442-2714 / www.ywcaici.com**

**신용회복위원회**

**대학생 미취업청년지원 프로그램**

**1. 대상:**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또는 미취업청년

**2. 신청 방법**

- 지부 방문: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및 상담 예약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요건, 준비서류는 콜센터(1600-5500) 연락으로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상담: 공동인증서가 있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방문하지 않고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사이버상담부: cyber.ccrs.or.kr

**3. 프로그램 내용**

|              |  |
|--------------|--|
| 채무감면         |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따라 채무를 감면합니다. 이때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이며, 개인워크아웃 관련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 신청비용 면제      | 특별지원 프로그램 신청비용인 5만원을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들에게 면제합니다.   |
| 상환유예 (대학생)   |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추가적인 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
| 상환유예 (미취업청년) | 최장 5년 이내 상환 유예를 보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 시 추가 2년 이내)  |

※ 더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 '개인채무조정' ➡ '특별지원 프로그램'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4  
12

통권 5호

# 인천잡담+

job잡담+ 이야기

\*「인천잡담+」  
인천(지역, 우리 관내)  
잡(job)  
담(談:이야기, 담다)  
플러스(알쓸신잡의 업그레이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격주로 발행되었던 「알쓸신잡」 구인정보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매주 화요일 업로드됩니다.



유튜브 채널

프로그램 문의는?  
032)460-4723, 4733

## 프로그램 및 행사 일정

행사일정 문의는?  
032)460-4717, 4766

| 일  | 화  | 수   | 목   | 금   |
|--|--|---|---|---|
| 2  | 3<br><b>취</b> 전기자동차의 변화<br>고용센터 6층 교육장<br>15:00~17:00                          | 4<br><b>취</b> 현명한 노후준비하기<br>고용센터 6층 교육장<br>15:00~17:00  | 5<br><b>취</b> 이력서&자기소개서 기초<br>작성법 공통<br>고용센터 6층 교육장<br>15:00~17:00  | 6<br><b>단</b> (청년층) 직업심리검사<br>결과를 통한 자기이해<br>별관 2층 취업희망실<br>14:00~17:00 |
| 9<br><b>취</b> 평생월급 프로젝트<br>고용센터 6층 교육장<br>15:00~17:00                  | 10<br><b>단</b> 신중년 건강관리<br>별관 2층 취업특강실<br>9:30~12:30                           | 11<br><b>취</b> 2025년 채용 트렌드<br>고용센터 6층 교육장<br>15:00~17:00<br><br><b>행</b> 일자리 수요데이<br>'취업네트'<br>인천고용센터 지하 2층<br>채용행사장<br>14:00~16:00                          | 12<br><b>취</b> 합리적인 신용관리<br>고용센터 6층 교육장<br>15:00~17:00<br><br><b>단</b> [50~60대] 고용24를 통한<br>일자리 탐색<br>별관 2층 취업희망실<br>9:30~12:30 | 13<br><b>취</b> 뿌리산업과 초정밀 가공의<br>미래<br>고용센터 6층 교육장<br>15:00~17:00        |
| 16<br><b>취</b> 구직스트레스 및 우울증<br>이해하고 극복하기<br>고용센터 6층 교육장<br>15:00~17:00 | 17<br><b>단</b> (청년층) MBTI로<br>자기인식을 통한 스트레스<br>관리<br>별관 2층 CAP실<br>14:00~17:00 | 18<br><b>단</b> [40~60대] 대국민<br>잡케어와 시를 활용한<br>구직기술 향상<br>센터 4층 프로그램실<br>9:30~12:30<br><br><b>행</b> 일자리 수요데이<br>'취업네트'<br>인천고용센터 지하 2층<br>채용행사장<br>14:00~16:00 | 19<br><b>취</b> 면접특강<br>고용센터 6층 교육장<br>15:00~17:00   | 20<br><b>취</b> 산업혁신을 지탱하는<br>기초기술(융접)<br>고용센터 6층 교육장<br>15:00~17:00     |
| 23<br><b>취</b> 알기쉬운 근로기준법<br>고용센터 6층 교육장<br>15:00~17:00                | 24   | 25  | 26<br><b>단</b> 강점을 알아야 건강이<br>보인다<br>별관 2층 취업특강실<br>9:30~12:30  | 27  |
| 30   | 31   | <b>프로그램 참여 신청 QR</b><br>   |   |   |

**취** 취업특강(2시간)

**단**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3시간)

**집** 집단상담프로그램

**행** 행사 일정

##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

### 3 실업인정 3편

Q. 구직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하였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일한 사실이 있다면 ①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②임금·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③일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 사실은 필수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 확인을 위한 국가기관(국세청, 4대보험 전산시스템)과의 정보 연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세금 신고 시 국세청에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실업인정일에 근로 및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Q.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의 취·창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문, 인터넷 또는 팩스로 취업 사실을 신고하면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신청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 “알·쓸·국·취” 취업 걸림돌 걷어내는 복지서비스로 국취와 함께 취업성공

국취 참여자에게 취업의 걸림돌이 있을 때 취업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어요.  
개인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로 취업성공을 도와드립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 하는 제도  
 • 지원내용: 생계유지비, 각종 의료서비스,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가구원 내 초·중·고생 학용품비, 동절기 연료비, 출산지원비, 장례비,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등

### 긴급돌봄지원사업

주 돌봄자 부재(사망, 입원 등), 질병, 부상 등으로 짧은 기간 동안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돌봄서비스를 제공  
 • 지원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인력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 기본돌봄(신체활동지원 등), 가사·아동지원서비스 제공

### 심리안정프로그램

구직·실직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을 겪는 구직자에게 심리상담 전문가가 정서적 안정감 회복, 구직의욕 향상 등을 집중 지원  
 • 지원내용: 대상자에게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심리검사 포함)를 1:1 대면으로 총 8회기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유연근무) 지원제도

### 1. 어떤 제도인가요?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하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고용문화를 만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을 지원

|        |   |
|--------|---|
| 시차출퇴근제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br>*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 선택근무제  | 정산시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
|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 원격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 2. 지원대상

유연근무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고,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도록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지원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3. 지원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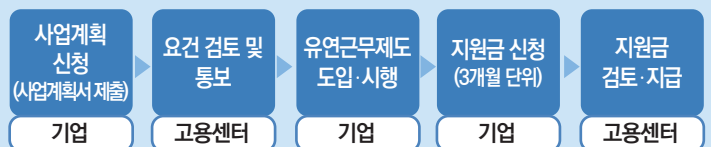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①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를 마련하고, ②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전자·기계적 방식: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

### 4. 지원내용

| 유형      | 1개월당 지급액  |          | 1년간 최대 지급한도 |
|---------|---|----------|-------------|
|         | 월 6일~11일  | 월 12일 이상 |             |
| 시차출퇴근   | 10만원  | 20만원     | 240만원       |
| 재택·원격근무 | 15만원  | 30만원     | 360만원       |
|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투자금액 대비 5/10 (총 금액 대비, 최대 2,000만원 지원) |          |             |
| 선택근무    |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          | 360만원       |

\* 지원인원한도: 전체 피보험자수의 30%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 5. 지원절차



### 6.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1350)



## 노동법 Q&amp;A | 연차휴가제도①

**Q** 연차휴가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제60조,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

**Tip!**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한 후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다음 해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과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연차유급휴가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에게 다음 해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한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 유급휴가(최대 10일)를 줍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만 3년 근로(예) '24.1.1.~'26.12.31.)하면 '27.1.1. 계속근로연수가 4년차이므로 16일의 연차유급휴가(기본연차 15일+가산연차 1일)가 발생합니다.

**Tip!**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휴가 외에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1일을 추가로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추가 휴가를 포함해 총 휴가일수는 최대 25일입니다. 25일을 초과해도 휴가일수는 25일만 부여합니다.

〈 계속근로연수 대비 연차휴가 발생일수 〉

| 근속년수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7년   | 9년   | 15년  | 19년  | 21년   | 25년   |
|------|-----|-----|------|-----|------|------|------|------|------|-------|-------|
| 가산일수 |     |     | (+1) |     | (+2) | (+3) | (+4) | (+7) | (+9) | (+10) | (+10) |
| 휴가일수 | 15일 | 15일 | 16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22일  | 24일  | 25일   | 25일   |

※ 만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나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 단위 개근(결근이 없는 경우)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최대 11일)가 발생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를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4-2 최저임금

【최저임금 판단 방법】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주·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 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비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이 중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4년 1월 급여 2,309,250원을 받는 경우

| 월급명세서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추려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            |
|---|---------------|-----------------------|------------|
| 기본급   | 1,587,000원    | 기본급                   | 1,587,000원 |
| 직무수당  | 130,000원      | 직무수당                  | 130,000원   |
| 교통비   | 100,000원      | 교통비                   | 100,000원   |
| 식대  | 100,000원      | 식대                    | 100,000원   |
| 시간외수당   | 260,000원      | 상여금                   | 132,250원   |
| 상여금   | 132,250원      |                       |            |
| 계   | 2,309,250원    | 계                     | 2,049,250원 |
|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100% (1,587,000원을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지급) |               | ※ 식대, 교통비 및 상여금 전부 산입 |            |

9,805원  
(2,049,250원/  
209시간)은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한 직종】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단순노무업무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  
- 단순노무업무 직종은 숙련 향상 필요성이 낮아 수습기간 운영이 불필요 -

|       |  |
|-------|--|
| 건설    |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종사자)                      |
| 운송    | 택배원, 음식 및 기타 배달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이삿짐운반원 |
| 제조    | 수작업 포장원, 제조업 단순 종사원, 제품 단순 선별원           |
| 청소    |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 수거원                      |
| 경비    | 건물관리원, 검표원 등, 아파트경비원                     |
| 가사    |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
| 음식/판매 |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유원 등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
| 기타    | 주차관리원, 세탁원                               |



사건 1 최저임금 위반, 뒤늦게 합의했으나 처벌된 사례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 A는 근로자에게 뒤늦게 최저임금 부족액을 주고 합의했으나, 형사처벌〉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음  
▶ 최저임금 위반 확인 시, 즉시 시정하지 않으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  
\* 반의사 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

사건 2 근로계약 1년 미만의 근로자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

〈사업주 B는 6개월의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채용, 3개월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지급 8,880원을 지급〉

근로계약 1년 미만으로 한 경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함  
▶ 최저임금 차액(시간당 980원)\*지급  
\*9,860원(24년 시간급 최저임금) - 8,880원  
참고 : '18.3.20. 부터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단순노무업무 종사자에게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함